「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5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성 · 정지원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 ·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영태 · 김원섭 ·

김재우・김정도・김춘남・박교상・박세채・

신용하 · 안주찬 · 이명희 · 이상호 · 이정희 ·

이지연 · 장미경 · 장세구 · 추은희 · 허민근

의원(20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3월 6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3월 14일

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민 성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O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O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-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53조, 제54조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O 본 개정조례안은

•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·공정성·책임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O 검토 결과,

- 개정의 주요내용은 유사·중복과제 선정 금지,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, 용역실명제,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, 용역결과의 공개·평가·활용 등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법규형식,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인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, 연구결과의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활용을 방지하고, 대통령령인 "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" 제54조 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용역대상 선정에 신중 을 기하고, 용역결과를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또한, 부칙으로 「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으로써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'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'가 폐지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

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대상이었던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사전심의절차가 사라지게 됨.

- 이로인한 무차별적인 용역 예산 편성 및 미흡한 사업 계획 등의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부서 및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및 기준수립을 철저히 하여 용역대상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